

**반월국가산업단지 거리환경 개선 및
전력설비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**



반월국가산업단지 거리환경 개선 및 전력설비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

의안 번호	10-4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「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협약 보고하는 사항임.
-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관리기관인 안산시·한국산업단지공단·한국전력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정비사업을 연계·협업하여 시설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.

☐ 협약개요

- 협약 체결일 : 2026. 9. 15.(화) 예정
- 협약기간 : 2026. 9. 15. ~ 2027. 9. 15.(체결일로부터 1년간)
- 대상기관
 - 안산시,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,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
- 소요예산 : 없음

☐ 주요내용

-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된 기반시설(도로, 전력공급시설 등)에 대한 관리기관 각각의 보수·개량 및 확충사업을 연계·협업하여 추진
-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중복공사 방지 및 공사기간 단축으로 예산 절감 및 시민·입주기업 불편 최소화
- 기관별 자체 예산 활용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

☐ 협약서(안) : 【붙임】

☐ 협약 안전 점검표

반월국가산업단지 거리환경 개선 및 전력설비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서

안산시,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,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(이하 “협약기관”)는 산업단지 내 노후된 기반설비에 대한 개선사업(이하 “개선사업”)을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써,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보수·개량 및 확충, 전력 설비의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한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개선사업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협력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, 반월국가산업단지의 환경개선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차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범시행) ① 개선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노후된 블록(구간)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1년간 시행한다.

② 협약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시행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사업의 시범시행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
제3조(협력사항) 협약기관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다음 각호의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다.

1. 안산시청

가. 노후 기반설비 교체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등 행정 인허가의 신속 처리
나.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및 도로관리 정보 지원

2.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

가. 노후 기반설비 개선사업 대상 구역 선정 및 입주기업 참여 지원
나. 구조고도화사업(개발이익 재투자 사업 등) 재원 확보, 사업 추진 및 성과 홍보
다. 입주기업 대상 정전예방 및 에너지 효율화 관련 협업기관 사업 홍보

3.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

가. 노후 배전설비의 정밀 진단 및 블록 단위 교체 공사 시행

나. 지능형 배전관리 시스템(ADMS) 도입을 통한 신속 고장 복구 체계 운영

다. 특고압 수전설비 고장사례 및 기술자료 공유를 통한 입주기업 설비관리 지원

제4조(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) 협약기관은 개선사업의 원활한 시범적 추진과 그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협약기관의 소속 담당 책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경비부담) 개선사업의 시범적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3조에 따른 기관별 협력업무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협약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6조(유효기간) 이 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다. 다만, 협약기관이 제2조에 따른 개선사업의 시범시행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비밀유지)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,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8조(협약의 해석 등)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견(異見)이 있거나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,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9월 15일



안 산 시 장 이 민 근



경기지역본부장 윤선미



안산지사장 김 훈

협약(보고) 안전 점검표

협약명	반월국가산업단지 거리환경 개선 및 전력설비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구 분	검 토 항 목	점 검 결 과												
개 요	1. 협약 기간 : 2026. 9. 15. ~ 2027. 9. 15.	(1년)												
	2. 협약 성격	신 규 ☒ 연 장 ☐												
	3. 공모사업 관련	여 부 ☐ ☒												
	4. 협약 당사자 : 안산시,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 본부,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	1곳 ☐ 2곳 이상 ☒												
	5. 협약안전 의회 제출 시기 (체결일 : 2026. 9. 15.)	체결 전 ☒ 체결 후 ☐ (직후 회기/ 그 외)												
	6. 의회 의결후 효력발생 조건 명시 ※ 보고건 협약 제외	유 무 ☐ ☐ 비해당 ☒												
예산 관련	1. 의무부담 내용	유 무 ☐ ☒												
	1-1. 비용추계 (단위: 천원)													
	<table><tr><td>구 분</td><td>합 계</td><td>2026</td><td>2027</td><td>2028</td><td>2029</td></tr><tr><td>금 액</td><td>해</td><td>당</td><td>없</td><td>음</td><td></td></tr></table>		구 분	합 계	2026	2027	2028	2029	금 액	해	당	없	음	
	구 분	합 계	2026	2027	2028	2029								
금 액	해	당	없	음										
☞ 그 외사항 : 기타 권리포기 등 의무부담일 경우 기재														
	2. 예산부서와 사전협의	유 무 ☐ ☐ 비해당 ☒												
행정 관련	1. 기타 관련 법령 저촉 관계	유 무 ☐ ☒												
	2. 행정 절차 - 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여부 (예: 중기지방재정계획, 공유재산관리계획 등) ☞ "미이행"의 경우 계획제출	유 무 ☐ ☐ 비해당 ☒												
	3. 협약 전/후 관계자 의견 수렴 - 협약 체결 전·후 관련 부서나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여부(관련부서:)	유 무 ☐ ☐ 비해당 ☒												